|  |  |  |
| --- | --- | --- |
|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재종[2011]1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물가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재 재정감찰전문요원 판사처, 국가전력망공사, 중국남부지역전력망유한책임회사, 내몽고자치구 전력유한책임회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과 함께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관리 잠행방법>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인쇄발부하므로 본 방법을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 관리 잠행방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2011년 11월 29일  첨부: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징수사용 관리**  **잠행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의 자금적립, 사용관리 및 감독검사 등 사항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자금적립**  **제3조**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은 국가재정 공공예산에서 배정한 특별자금(이하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이라 함)과 법에 근거하여 전력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재생에너지전력가격 부가수입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은 중앙재정의 연도 공공예산에서 배정한다.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서 배정한 중앙예산 내의 사회간접자본건설 특별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티벳트자치구 외의 전국 범위 내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농업생산용전기(농업배수와 관개용 전기 포함)를 공제한 후 판매된 전기량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징수범위에 속하는 판매전기량은 아래와 같다.  (1) 성급 전력망 기업(각 급 자회사 포함)이 전력사용자에게 판매한 전기량  (2) 성급 전력망 기업이 합리적인 전선소모를 공제한 후 판매한 전기량 (즉, 중간공급단위에 실제 판매한 전기량. 각 급 자회사에 판매한 전기량은 미포함)  (3) 성급 전력망 기업이 해외에 판매한 전기량  (4) 기업 자체의 발전소가 스스로 발전, 이용한 전기량  (5) 지역의 독립 전력망(지역의 전력공급기업 포함. 하동)기업이 판매한 전기량(성급 전력망 기업이 지역의 독립 전력망에 판매한 전기량은 포함하지 아니함)  (6) 전력 사용량이 큰 사용자와 발전기업이 직접적으로 거래한 전기량  성(자치구, 직할시) 사이에 거래한 전기량은 전력을 사용하는 성의 판매전기량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징수한다.  **제7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징수기준은 0.008위안/KWh이다. 징수기준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중장기 총량목표와 개발이용규획 및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지출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제8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재 재정감찰전문요원판공실(이하 전문요원판공실이라 약함)에서 매월 전력망 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며, 수입은 전액 중앙 국고에 상납한다.  전력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력망 기업이 대리 징수한다.  (1) 전력 사용량이 큰 사용자와 발전기업이 직접 거래한 전기량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전력을 대리 전송하는 전력망 기업이 대리 징수한다  (2) 지역의 독립 전력망이 판매한 전기량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지역 전력망 기업이 전력사용자로부터 전기사용료를 징수할 때 함께 대리 징수한다.  (3) 기업의 자체 발전소로 발전하여 사용하는 전기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소재지 전력망 기업이 대리 징수한다.  (4) 기타 사회에 판매한 전기량의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는 성급 전력망 기업이 전력사용자로부터 전기사용료를 징수할 때 함께 대리 징수한다.  **제9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입은 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 중 제103류 01조 68항 <재생에너지 전기세 부가수입>에 기입한다.  **제10조**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방의 독립 전력망 기업은 매월 10일전까지 소재지 전문요원판공실에 전월의 실제판매전기량(자체 발전소의 발전, 사용 전기량 포함. 하동)과 납부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신고해야 한다. 전문요원판공실은 매월 12일전까지 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징수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징수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기업에 <비 납세수입 일반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역의 독립 전력망 기업은 매월 15일전까지 전문요원판공실에서 발행한 <비 납세수입 일반계산서>에 규정한 납부금액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전문요원판공실은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역의 독립 전력망 기업의 전년도 실제 판매 전기량에 근거하여 차기 연도 3월말까지 관련기업의 전년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에 대한 연말 정산작업을 끝내야 한다.  전문요원판공실은 연말 정산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력사용자의 미납 전기사용료, 전력망 기업의 악성대손 처리 실제상황을 심사하여 확인 후 관련기업의 연도 실제 판매한 전기량에 계상하지 않는다.  **제12조** 중앙재정은 실제 징수한 재생에너지 부가 대리 징수액의 2‰를 수수료 관련 전력망 기업에 지급한다. 대리징수 수수료는 재생에너지발전기금 중 지출예산에서 지출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대리징수 전력망기업은 대리징수 수입에서 직접 수수료를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에 증치세를 징수함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는 재정부 예산에서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여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수입>과목에 기입하여 결산한다.  **제3장 자금사용**  **제14조** 재생에너지발전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개발 이용활동에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은 아래와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과 시범공사  ② 농촌, 방목지 생활용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이용프로젝트  ③ 궁벽한 지역과 섬의 독립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구축  ④ 재생에너지자원의 탐사, 평가 및 관련정보시스템 구축  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설비의 현지화 생산 추진  ⑥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이 규정한 기타 관련 사항  (2)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은 아래와 같은 지원사항에 사용한다.  ① 전력망 기업이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서 제정한 온라인 전력가격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 등의 경쟁방식으로 확정한 온라인 전력가격에 따라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량 비용이 일반 에너지전력 온라인 평균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차액  ② 당지 분류별 판매 전력가격을 집행함과 아울러 국가에서 투자 혹은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합리적인 운행과 관리비용이 판매한 전기가격보다 높은 부분  ③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전력망 접속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중 전력가격 판매로 회수할 수 없는 부분.  **제15조** 관련기업이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보조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관리 잠행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재건[2006]237호) 등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이 고정자산투자에 사용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투자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력네트워크 커버범위 내 전력망 접속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발전프로젝트의 송전망 전기량을 전액 매입한다.  **제17조**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보조자금의 신고, 심사, 조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재생에너지발전 특별자금지출은 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 중 제211류 12조 01항의 <재생에너지>에 기입한다.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지출은 정부수입지출 분류과목 중 제211류 15조 01항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배정에 대한 지출>에 기입한다. (신설)  **제4장 감독검사**  **제19조** 재정, 가격, 에너지, 회계감사부문은 그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의 징수, 조달, 사용과 관리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20조** 성급 전력망 기업과 지방의 독립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를 제때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입을 가다 징수하거나 과소 징수하거나 연기 징수하거나 징수를 정지하거나 또는 횡령, 점유, 유용한 단위 및 책임자에 대하여 재정, 가격, 에너지, 심계 등 유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재정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처분조례>, <가격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규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 본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에서 해석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的**  **通知**  财综[2011]115号    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能源局、物价局，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国家电网公司、中国南方电网有限责任公司、内蒙古自治区电力有限责任公司：  为了促进可再生能源的开发利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有关规定，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共同制定了《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暂行办法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 　　　　　　　　　　　　　　　　　　　　　 二○一一年十一月二十九日    附件：    **可再生能源发展基金征收使用管理**  **暂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促进可再生能源的开发利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可再生能源发展基金的资金筹集、使用管理和监督检查等适用本办法。    **第二章 资金筹集**  **第三条** 可再生能源发展基金包括国家财政公共预算安排的专项资金（以下简称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和依法向电力用户征收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等。  **第四条** 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由中央财政从年度公共预算中予以安排（不含国务院投资主管部门安排的中央预算内基本建设专项资金）。  **第五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在除西藏自治区以外的全国范围内，对各省、自治区、直辖市扣除农业生产用电（含农业排灌用电）后的销售电量征收。  **第六条** 各省、自治区、直辖市纳入可再生能源电价附加征收范围的销售电量包括：  　　（一）省级电网企业（含各级子公司）销售给电力用户的电量；  　　（二）省级电网企业扣除合理线损后的趸售电量（即实际销售给转供单位的电量，不含趸售给各级子公司的电量）；  　　（三）省级电网企业对境外销售电量；  　　（四）企业自备电厂自发自用电量；  　　（五）地方独立电网（含地方供电企业，下同）销售电量（不含省级电网企业销售给地方独立电网的电量）；  　　（六）大用户与发电企业直接交易的电量。  　　省（自治区、直辖市）际间交易电量，计入受电省份的销售电量征收可再生能源电价附加。  **第七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征收标准为8厘/千瓦时。根据可再生能源开发利用中长期总量目标和开发利用规划，以及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支情况，征收标准可以适时调整。  **第八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由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以下简称专员办）按月向电网企业征收，实行直接缴库，收入全额上缴中央国库。  　　电力用户应缴纳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按照下列方式由电网企业代征：  　　（一）大用户与发电企业直接交易电量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由代为输送电量的电网企业代征；  　　（二）地方独立电网销售电量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由地方电网企业在向电力用户收取电费时一并代征；  　　（三）企业自备电厂自发自用电量应缴纳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由所在地电网企业代征；  　　（四）其他社会销售电量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由省级电网企业在向电力用户收取电费时一并代征。  **第九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填列政府收支分类科目第103类01款68项“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  **第十条** 省级电网企业和地方独立电网企业，应于每月10日前向驻当地专员办申报上月实际销售电量（含自备电厂自发自用电量，下同）和应缴纳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专员办应于每月12日前完成对企业申报的审核，确定可再生能源电价附加征收额，并向申报企业开具《非税收入一般缴款书》。省级电网企业和地方独立电网企业，应于每月15日前，按照专员办开具《非税收入一般缴款书》所规定的缴款额，足额上缴可再生能源电价附加。  **第十一条** 专员办根据省级电网企业和地方独立电网企业全年实际销售电量，在次年3月底前完成对相关企业全年应缴可再生能源电价附加的汇算清缴工作。  　　专员办开展汇算清缴工作时，应对电力用户欠缴电费、电网企业核销坏账损失的电量情况进行审核，经确认后不计入相关企业全年实际销售电量。  **第十二条** 中央财政按照可再生能源附加实际代征额的2‰付给相关电网企业代征手续费，代征手续费从可再生能源发展基金支出预算中安排，具体支付方式按照财政部的有关规定执行。代征电网企业不得从代征收入中直接提留代征手续费。  **第十三条** 对可再生能源电价附加征收增值税而减少的收入，由财政预算安排相应资金予以弥补，并计入“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科目核算。    **第三章 资金使用**  **第十四条** 可再生能源发展基金用于支持可再生能源发电和开发利用活动：  　　（一）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主要用于支持以下可再生能源开发利用活动：  　　1.可再生能源开发利用的科学技术研究、标准制定和示范工程；  　　2.农村、牧区生活用能的可再生能源利用项目；  　　3.偏远地区和海岛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建设；  　　4.可再生能源的资源勘查、评价和相关信息系统建设；  　　5.促进可再生能源开发利用设备的本地化生产；  　　6.《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规定的其他相关事项。  　　（二）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用于以下补助：  　　1、电网企业按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确定的上网电价，或者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有关规定通过招标等竞争性方式确定的上网电价，收购可再生能源电量所发生的费用，高于按照常规能源发电平均上网电价计算所发生费用之间的差额；  　　2、执行当地分类销售电价，且由国家投资或者补贴建设的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其合理的运行和管理费用超出销售电价的部分；  　　3.电网企业为收购可再生能源电量而支付的合理的接网费用以及其他合理的相关费用，不能通过销售电价回收的部分。  **第十五条** 相关企业申请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补助的具体办法，按照《财政部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建[2006]237号）等有关文件的规定执行。  　　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用于固定资产投资的，还应按照中央政府投资管理的有关规定执行。  **第十六条** 电网企业应按照《可再生能源法》相关规定，全额收购其电网覆盖范围内符合并网技术标准的可再生能源并网发电项目的上网电量。  **第十七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的申报、审核、拨付等具体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另行制定。  **第十八条** 可再生能源发展专项资金支出填列政府收支分类科目中第211类12款01项“可再生能源”；可再生能源电价附加支出填列政府收支分类科目中第211类15款01项“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安排的支出”（新增）。    **第四章 监督检查**  **第十九条** 财政、价格、能源、审计部门按照职责分工，对可再生能源电价附加的征收、拨付、使用和管理情况进行监督检查。  **第二十条** 省级电网企业和地方独立电网企业，应及时足额上缴可再生能源电价附加，不得拖延缴纳。  **第二十一条** 未经批准，多征、减征、缓征、停征或截留、挤占、挪用可再生能源电价附加收入的单位及责任人，由财政、价格、能源、审计等相关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等法律法规追究法律责任。    **第五章 附 则**  **第二十二条** 本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解释。  **第二十三条** 本办法自2012年1月1日起施行。 |